



설 동 훈

정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동포도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더라도 11월 1일부터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 음식점업, 빌딩 관리 등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 최장 2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취업관리제도'라 부른다.

## 재외동포 서비스직 제한 불합리

물론, 취업관리제도를 통해 도입할 인력의 규모가 무제한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3년 3월까지 자진 출국하게 되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를 고려하여 그 규모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취업관리제도는 실제 '재외동포'이면서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국과 구 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작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들 내

##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선

제조업·건설업·농림업

수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취업관리제도를

하루 빨리 실시하여야 한다.

부의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외동포법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국과 구 소련 지역 동포들은 여전히 '재외동포 사증'(F-4)을 발급 받을 수 없지만, 국내에서 합법적 체류와 취업이 허용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중국과 구 소련 지역을 포함한 외국국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취업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진심으

# 취업관리제, 전 업종 실시를

로 환영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정부는 취업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부문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전직(轉職)이 매우 잦다. 한국인은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데, 재외동포는 그것이 매우 어렵도록 한다면 명백한 차별대우다. 이처럼 현실과 유리된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면 제도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무단으로 작업장을 옮길 것이고, 그 결과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도 운영의 골격을 새로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이 가능한 특정 업종·직종·숙련수준·지역을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취업관리제도의 결정적 문제점은 이민족 외국인노동자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민족 외국인노동자는 제조업·건설업·농림업·수산업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고, 재외동포 노동자는 서비스업에

취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재외동포에게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신분을 제공하고, 이민족 노동자는 명백히 근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문제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같은 외국인 신분인데 누구는 근로자로 간주되고 누구는 안 된다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중국등 외국인노동자에도 적용돼야

취업관리제도는 그 동안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설움을 받아왔던 동포들에게 희망의 빛이다. 이 제도를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국적이나 민족에 의한 차별은 국제법은 물론이고 국내법에서도 금지되고 있다. 국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들여올 경우, 재외동포든 이민족이든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게 정당하다. 제조업·건설업·농림업·수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취업관리제도를 하루 빨리 실시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